

평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7. 11.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배치되는 부분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
 -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
- 나.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5조)
 -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군수가 선임
 - 법인 또는 위탁 운영할 경우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
 - 센터장의 임기는 3년
- 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및 절차 규정(안 제6조)
 -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 및 사고발생시 보험료 청구 업무수행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입법예고(2007. 8. 17 ~ 9. 5)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평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군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3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

②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군수가 비영리법인에게 센터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할 수 있다.

- ④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평창군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1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 ⑥ 그 밖에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군수가 선임한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1월 전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6조(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등 가입) ① 「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 제10조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군수에게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가입 후 사고발생에 따른 보험료 지급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장은 제7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군

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 결산서 등 회계관련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종전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평창군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종전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자원봉사센터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③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로 하여금 위험이 수반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안전교육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 중인 자원봉사자의 신체적 보호
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손실보호
3.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호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입원·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④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제14조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등)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2.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②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제15조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자원봉사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을 둔다.

②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④(생략)

⑤시·군·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군·자치구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시·군·자치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⑥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